

부천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5년 7월 1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5년 7월 4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20회 부천시의회(정례회)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(2005년 7월 12일)
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총무과장 김영의)

□ 제안이유

- 표창대상자 선발시 부천시인사위원회에서 심사를 대행하도록 하여 부서별로 공무원이 아닌 외부 위원을 직접 방문하여 심의를 받음으로써 행정력 낭비와 위원의 업무가 과중함으로 앞으로는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,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시장이 표창장을 수여하는 때에는 공적심의를 부천시인사위원회에서 대행하여 왔으나, 앞으로는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변경함.(안 제9조제2항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 내용	답변 내용
<p>○ 공무원이 아닌 외부인사가 심의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므로 외부인사 대신 공무원으로 충원하겠다는 것입니까?</p> <p>○ 이제까지 인사위원회에서 공적심의를 했다는 건가요?</p> <p>○ 공무원들이 공적심의를 하는데 객관성이 어떻게 보장될 것인지?</p>	<p>○ 공무원이 아닌 외부 위원을 직접 방문하여 심의를 받음으로써 행정력 낭비와 위원의 업무가 과중하는 등 비효율적인 면이 있었습니다</p> <p>○ 네, 그렇습니다.</p> <p>○ 지금은 각 국장들이 실무적인 입장에서 표창대상자를 판단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.</p>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○ 없음

나. 반대토론

○ 없음

5. 심사결과

○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 요지

○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음

부천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409호
의결 년월일	2005. 7. 15 (제120회)

제출년월일 : 2005. 7. 1.

제출자 : 부천시장

□ 제안이유

- 표창대상자 선발시 부천시인사위원회에서 심사를 대행하도록 하여 부서별로 공무원이 아닌 외부 위원을 직접 방문하여 심의를 받음으로써 행정력 낭비와 위원의 업무가 과중함으로 앞으로는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,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시장이 표창장을 수여하는 때에는 공적심의를 부천시인사위원회에서 대행하여 왔으나, 앞으로는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변경함.(안 제9조제2항)

부천시조례 제 호

부천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부천시포상조례”를 “부천시 포상 조례”로 한다.

제9조제2항중 “인사위원회”를 “공적심사위원회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부천시포상조례</u></p> <p>제9조(포상절차) ① (생략)</p> <p>②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<u>인사위원회</u>의 심의를 거쳐 수여하여야 한다.</p> <p>③ · ④ (생략)</p>	<p><u>부천시 포상 조례</u></p> <p>제9조(포상절차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-----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 - - 공 적 심 사 위 원 회</p> <p>-----.</p> <p>③ · ④ (현행과 같음)</p>